

<참 조>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제출연월일 : 2006. 3.

제 출 자 : 경기도지사

□ 제정 이유

-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전문개정·시행됨에 따라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와 재해 복구사업 사전심의를 위한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가. 행정(1)부지사 밑에 경기도제1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제1위원회), 행정(2)부지사 밑에 경기도제2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제2위원회)를 설치하고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50인 이하로 구성·운영함(안 제2조)
- 나. 제1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 제2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개발국장이 되고 위원장 부재시 참석 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출된 임시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함(안 제2조 및 제3조)
- 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음(안 제4조)
- 라. 위원회의 검토·심의사항 등 위원회의 기능을 정함(안 제5조)
- 마. 위원회는 사안별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음(안 제6조)
- 바. 사전 재해영향성검토 절차 및 재해복구사업 사전 심의절차를 정함(안 제3장 및 제4장)
- 사. 위원장은 필요시 관련 위원, 공무원 등 관계자와 현지 조사와 의견청취를 할 수 있음(안 제18조)
- 아.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안 제21조)

□ 제정조례안 : 덧붙임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도지사가 정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와 같은 법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일정규모 이상인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를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2조(위원회의 설치·구성) ①위원회는 경기도제1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이하 “제1위원회”라 한다)와 경기도제2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이하 “제2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행정(1)부지사 밑에 제1위원회를 행정(2)부지사 밑에 제2위원회를 각각 설치한다.

②각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5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제1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고, 제2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개발국장이 된다.

④각 위원회별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공무원

가. 제1위원회 : 건설계획과장, 재난민방위과장, 도시계획과장

나. 제2위원회 : 도시주택과장, 건설재난과장, 도로교통과장

2. 위촉직 위원은 도로·교량, 하천, 산사태, 해안시설, 배수펌프장 등 관련분야 및 방재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전문대학 또는 종합대학 부교수 이상인 사람

나.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다.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또는 자연환경기술사를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마. 경기도에서 방재관련 실무업무에 대해 3년 이상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퇴직 공무원

⑤위원의 위촉에 있어 공정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분야 출신학교, 직업, 연령 등이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각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위원회를 운영할 수 없거나 불가피하게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출된 임시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임기) ①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해촉 등의 사유로 결위된 때에는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임기에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
4. 그밖에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심의한다.

1.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나.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다.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2. 재해복구사업사전심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시설별 피해원인 분석과 피해재발방지대책 수립여부

나. 시설별 주변의 이용사항을 고려한 복구공법 반영 여부

다. 시·군간 이해관계 해소대책의 수립 여부

라. 재해복구사업 시행의 효과

마. 그 밖에 도지사가 사전심의 기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사안별·공정별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정 및 사안별로 위원장이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소집일로부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의 경우는 7일,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의 경우는 3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의무) ①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검토·심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며, 용역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대상사업에 관여한 위원은 사전에 위원장에게 심의제척 요청을 하여 공정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 사업의 검토·심의 참여금지 및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각 위원은 회의 및 위원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절차

제8조 (협의대상)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별표 1의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말한다.

제9조(협의요청 등) ①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 규정에 의한 협의대상을 협의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항목을 검토한 협의서를 작성하고, 협의에 필요한 부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검토위원회에 이를 송부하여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검토의견 제출)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토요청을 받은 위원회의 위원은 제5조 제1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실무지침서에 의한 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협의의견 통보 및 사후관리) ①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의견을 통보받은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의견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절차

제12조(사전심의대상 및 범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복구공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설계에 계상된 물량과 공사비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제외한다.

1. 재해복구비(용지보상비 포함)가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사업 중 시장·군수가 발주한 사업
2.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3조(심의요청) ①시장·군수가 사전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요청서(이하 “심의요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계서류 10부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서류를 조정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시설계단계는 설계완료 예정일로부터 30일 전에, 공사준공단계는 준공검사 예정일로부터 60일 전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설계 심의시 기본설계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설계한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대하여도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의안설명) 위원장은 심의를 요청한 시·군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의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심의 요청한 의안에 대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심의의결) 심의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채택·조건부채택 또는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1. “원안채택”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2. “조건부채택”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을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3. “재심의”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제16조(검토의견 제출) 위원회의 위원은 제5조 제2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견서의 서식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17조(심의결과 조치) ①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심의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기관 등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시장·군수는 보완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심의처리 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현지조사 및 회의록 등

제18조(현지조사 및 의견청취) ①위원장은 사안에 따라 심의 및 검토 사항의 내용 확

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 시행자, 사업 승인기관 및 관계공무원 등 관계자와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간사 및 서기 등)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간사 1인과 간사를 보조하기 위한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제1위원회의의 경우 재난민방위과장과 재난복구담당 사무관이 되며, 제2위원회의의 경우 건설재난과장과 재난담당 사무관이 된다. 다만 담당과장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담당사무관이 그 직무를 겸임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20조(회의록) ① 제6조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검토사항
4. 토의진행사항
5. 위원발언 내용
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회의록의 서식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21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